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□ **개정이유**

○ 읍·면·동 위임 사무의 본청 환원 및 소관부서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

□ **주요내용**

○ 현행 규정명 반영(안 제4조)

○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

- 소관부서 변경 : 1건
  - 세정과 → 납세지원과
- 위임사무 삭제 : 7건
  - 도로관리과(불법행위단속, 도로환경정비)
  - 하천관리과(하천의 권리, 점용허가, 점용료 부과, 허가 취소 등)

□ **개정규칙안:** 별첨

□ **신·구조문대비표:** 별첨

□ **관계법령발췌서:** 별첨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□ **관련사업계획서:** 해당없음

□ **예산 수반사항:** 해당없음

□ **사전예고 결과:** 예정

○ 입법예고 기간: 2026. 11. 20. ~ 12. 10.(20일간)

□ **조례·규칙 심의 결과:** 예정

○ 심의회 개최일: 2026. 12.

□ **기타 참고사항:** 별첨

○ 현행 규칙

○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(예정), 규제영향분석 결과서

파주시 규칙 제 호

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행정지원과 (☏ 940-8606)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최 희 진
	조 직 팀 장	이 은 경
	담 당 자	조 창 휘

[별표]

위 임 사 무 명(제2조 관련)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납세지원과	1. 도세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	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	읍·면·동
징수과	1. 도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체납액 징수독려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6조	읍·면
		② 도세의 수납(금융결재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)	「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」 제2조 제1항 「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	읍·면·동
하천관리과	1.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		「하천법」 제75조 「경기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	읍·면
	2. 하천의 감시	① 하천감시원의 임명 (소속 공무원 중 업무 관련 담당자 지정)과 그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	같은 법 제72조	읍·면
		②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69조·제93조·제94조·제95조·제96조	읍·면
		③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·처리	같은 법 제69조	읍·면
농업정책과	1.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사무 중 다음의 권한	①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신청· 접수	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	읍·면·동 (교하동, 금촌3동에 한함)
		② 경작실태 조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③ 지급자격 심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④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⑤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및 공급	「농지법」 제21조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권한과 책임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.	제4조(권한과 책임의 표시) ----------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3조----------.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**기타 참고사항**: 현행규칙

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

(　　제정) 1996.03.01 조례 제 21
(일부개정) 2024.06.28 규칙 제78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. (개정 2011.7.25)

제2조(위임사항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“별표” 와 같다. (개정 2011.7.25)

제3조(감독)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 (개정 2011.7.25)

제4조(권한과 책임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.(개정 2013.7.26)

부칙(2024. 6. 28. 규칙 제784호)(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<생략>

② 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“친수하천과”를 “하천관리과”로 하고, “도로관리사업소”를 “도로관리과”로 한다.

[별표]

위 임 사 무 명(제2조 관련)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세정과	1. 도세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	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	읍・면・동
징수과	1. 도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체납액 징수독려 ② 도세의 수납(금융결재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)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6조 「경기도 도세 기본조례」 제2조 제1항 「파주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3조	읍・면 읍・면・동
하천관리과	1.「하천법」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양도・양수의 허가 처리	「하천법」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「경기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	읍・면
		② 상속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③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・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	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2.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하천 점용허가 중 토지의 점용허가	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	읍・면
	3.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	① 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 징수	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7조	읍・면
		② 하천 점용료의 감면	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	읍・면
		③ 원상회복명령,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	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4.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「하천법」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	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	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	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	같은 법 제69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	5. 제2호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 징수		같은 법 제67조 같은 조례 제2조	읍・면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하천관리과	6.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		같은 법 제7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7. 하천의 감시	① 하천감시원의 임명 (소속 공무원 중 업무관련 담당자 지정)과 그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	같은 법 제72조	읍·면
		②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69조·제93조·제94조·제95조·제96조	읍·면
		③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·처리	같은 법 제69조	읍·면
도로관리과	1.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	① 토지형질변경 행위	「도로법」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신축,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	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2. 도로환경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② 도로에 토석, 죽목,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		③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45조 같은 조례 제2조	읍·면
농업정책과	1.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사무 중 다음의 권한	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· 접수	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	읍·면·동(교하동,금촌3동에 한함)
		② 경작실태 조사		
		③ 지급자격 심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④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⑤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및 공급	같은 법 제14조제2항 「농지법」 제21조	

□ **기타 참고사항**: 성별영향평가 결과서

파 주 시

수신 행정지원과장
(경유)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6A경기파주054)

1. 행정지원과-28913(2026.10.07)호와 관련합니다.
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」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여 성 가 족 과 장 김영미

여성정책전문위원	권문영	여성정책팀장	조영라	여성가족과장 김영미 2026. 10. 8.
협조자				
시행 여성가족과-20058	(2026. 10. 8.)	접수		
우 10932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(아동동)		/ http://www.paju.go.kr	
전화번호 031-940-8684	팩스번호 031-940-4419	/ myjihee@korea.kr	/ 비공개(5)	

□ **기타 참고사항**: 부패영향평가 결과서

「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」제6조에 따라
입법예고 기간 내, 실시 예정

「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」 제6조에 따라
입법예고 기간 내, 실시 예정

□ **기타 참고사항**: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

파 주 시

수신 행정지원과장
(경유)
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[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(일부개정안) 외 1건]

1. 행정지원과-32879(2026. 11. 19.)호와 관련합니다.
2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□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

소관부서	자치법규명	심사의견
행정지원과	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(일부개정안)	규제 해당사항 없음
	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(일부개정안)	

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각 1부. 끝.

예 산 법 무 과 장

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2026. 11. 19.
협조자
시행 예산법무과-21578 (2026. 11. 19.) 접수
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(아동동) / www.paju.go.kr
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/ ksw8732@korea.kr / 비공개(5)

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

1. 자치법규명	**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**(일부개정)	
2. 소관부서	부서명	행정지원과
	담 당	팀장 이은경 담당자 조창휘
3. 관련법령 등	○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	
4. 주요골자	○ 현행 규정명 반영(안 제4조) ○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(안 별표) - 소관부서 변경 : 1건 • 세정과 → 납세지원과 - 위임사무 삭제 : 7건 • 도로관리과(불법행위단속, 도로환경정비) • 하천관리과(하천의 권리, 점용허가, 점용료 부과, 허가 취소 등)	
5. 심사의견	**○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** -**「파주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** 일부개정은 읍·면·동 위임 사무의 본청 환원 및 소관부서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 -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**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**.	
6. 심사담당자	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(4171)	